#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08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이종배·김종양·김소희

김위상 • 박충권 • 최은석

임이자 • 박덕흠 • 성일종

박형수 · 정희용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 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
	는 경우 수도권(「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u>부여하여야 한다.</u>
<u>⑥</u>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②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	
항 및 <u>제6항</u> 과 관련한 사항의	<u>제7항</u>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